

영등포구의회
제202회 임시회

『구립데이케어센터 시설 관리·운영 사무
민간위탁 동의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7. 9. 1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『구립데이케어센터 시설 관리·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』 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54호로 2017년 8월 2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
2017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
구립데이케어센터 2개소의 시설 관리·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업무를
구의회 동의를 받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.

3. 주요 내용

○ 대상시설

연번	시설명(가칭)	위 치	규 모	정원
1	구립 신길5동데이케어센터	도림로80길 6 (신길동 341-3) <신길5제2경로당 2,3층>	245.46㎡ (74평)	21명
2	구립 대림1동데이케어센터	디지털로441 (대림동 899-2) <대림1동복지관 2층>	251.69㎡ (76평)	21명

○ 이용대상

- 장기요양급여 수급자(1~5등급)
-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

○ 서비스 내용

-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 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
- 급식 및 목욕서비스, 이동서비스
-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

○ 운영방법 : 민간위탁 운영체 선정 운영

○ 소요예산

- 민간위탁금 지원 없음
-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을 받을 경우 서울시에서 일부 보조금을 지급 받음

○ 관련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-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(대통령령)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」

5. 검토의견

-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제3항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가 민간위탁하여 운영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.
- 제출된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2개소이며 먼저 (가칭)신길5동 데이케어센터는 도림로 80길 6에 위치하고 있으며, 연면적 245.46m², 정원 21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·야간 보호시설이며,
- (가칭)대림1동 데이케어센터는 디지털로 441에 위치하고 있으며, 연면적 251.69m²에 정원 21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·야간 보호 시설임.
- 위 2개 시설의 이용대상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(1~5등급) 또는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보호가 필요한 자로서,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 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와 급식 및 목욕서비스, 이동서비스 등 임.

○ 현재 우리구 노인 인구는 2017년 7월말 기준으로 49,184명으로 우리구 인구 전체의 14.2%를 차지하고 있으며, 매년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가족이나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 인구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.

※ 노인요양등급자 현황

(2017.7월말 현재, 단위:명)

노인인구수	요양 등급자	시설별 이용자수					미이용자	이용율
		합 계	요양 시설	요양공동 생활가정	주·야간 보호	기타재가 서비스		
52,536	3,159	2,414	191	180	290	1,753	745	76.4%

○ 그에 따라 맞춤형 케어 복지서비스 욕구 또한 증가하고 있고 보호가 필요한 노인 문제는 본인 스스로는 물론 그 가족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.

따라서 이런 분들을 신체적, 심리적,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보다 만족스러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케어시설이 확충되어야 할 것이며, 시설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개별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○ 구립데이케어센터 시설 이용자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에 시설 관리·운영 사무를 위탁운영 하는 것이 어르신 복지서비스 증진에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됨.

관 련 법 령

1 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2 사회복지사업법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"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8.4.>

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8.4., 2012.1.26.>

3

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

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,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3.22.>

4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민간위탁"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2. "수탁기관"이라 함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<개정 2013.12.12>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민간위탁을 한다.
<개정 2013.12.12>

③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5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

제4조(시설의 위탁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되,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 및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,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은 별표와 같다.

③ 위탁계약기간은 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조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재위탁 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평가항목,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, 그 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위탁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